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92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후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립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을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시장의 사후관리 책무 신설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3조의2)

다.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8조)

바. 평가단의 평가 결과 제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

발의연월일 : 2026. 11. 18.

발 의 의 원 : 문순규・구점득・김동엽・김원일・김인애 박강우・박현재・이정희・차중현 의원(9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후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립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을 개정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시장의 사후관리 책무 신설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3조의2)

다.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마.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8조)

바. 평가단의 평가 결과 제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으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로, “예산을 확보하고”를 “예산 확보 및”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하 “도시재생완료지역”이라 한다)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완료지역에서 그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 쇠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해당 도시재생완료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의 추진) 시장은 도시재생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

생완료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후관리계획 수립 후 시행 현황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단원은 도시재생 분야 또는 해당 도시재생완료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평가단의 활동 지원)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센터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하거나 평가단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단 등에 대한 수당) 시장은 평가단 활동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제1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단의 평가 결과 제출 및 관리) ① 평가단은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실적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완료지역별로 평가단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
제3조(책무)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도시재생 --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 예산 확보 및 ----------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하 “도시재생완료지역”이라 한다)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

	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완료지역에서 그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 쇠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해당 도시재생완료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도시재생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6조(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후관리계획 수립 후 시행 현황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단원은 도시재생 분야 또는 해당 도시재생완료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재생완료지역 사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평가단의 활동 지원)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센터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하거나 평가단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평가단 등에 대한 수당) 시장은 평가단 활동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제1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평가단의 평가 결과 제출 및 관리) ① 평가단은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실적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완료지역별로 평가단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

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1.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의 상권보호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공공쓰레기수거집하장, 재활용품수거집하장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제10조의 주민협의체 설립 지원·운영 및 제10조의2의 도시재생조정협의회 구성·운영
4.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 구성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 문화·예술인 등 해당 지역 활동가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임차인, 상인,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제10조의2(도시재생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중간지원 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지역 시·도의원·동장 등으로 도시재생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조정협의회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① 제11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규제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